

공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

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공무 작업자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반○○(남, 49)은 1988년 11월 8일부터 D수산에서 공무작업을 하던 중 2001년 7월 G병원에서 천식성 기관지염(천식)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반○○은 36세 때인 1988년 11월 8일 D수산 공무과에 입사하여 보조워 1명과 함 께 초창기에는 2월부터 8월경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도 없이 사업장 에 기거하면서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20~25분마다 한 탱크씩 굴을 삶았고, 연강 뿐만 아니라 스텐레스강으로 이루어진 기계설비를 용접하였고, 철선인 2척의 선박도 용접하였으며, 폐수처리장의 환경관리인으로서 폐수처리 업무를 혼자 전담하였다. 폐수처리장은 지하시설로 폐수가 모아지면 지상 및 2층에 각각 설치된 1 차 및 2차 스크린을 거친 후 가성소다(1993년 이전에는 소석회 사용), 응집제인 황산 알루미늄(황산반토, 유산반토), 보조응집제를 투입한(중화반응) 다음 1차 침전조, 1차 폭기조, 2차 침전조, 2차 폭기조, 3차 침전조를 거쳐 방류하였는데 2시간마다 20분씩 하루 평균 4~5회 폐수에 화학약품을 직접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. 굴을 자숙하는 작 업이 없는 경우에는 중화반응없이 침전 및 폭기만 시키지만, 굴을 자숙하거나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는 시기에는 중화반응을 거치는 폐수량이 많아 24시간 폐수작업을 하였다. 특히 최초 발병한 1990년 12월까지는 용접, 하수처리 및 굴을 삶는 작업만

하였다. 과거 원양어선 갑판원, 수협 서기, 건설회사 잡부, 토목시험 보조원, 용접공 등으로 일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반○○은 20세 때부터 48세까지 3~4일에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, 1992년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산재사고, 1995년 5월 좌측 슬개골 골절, 1999년 7월 교통사고로 인한경추염좌 등의 질병력이 있다.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1990년 12월 폐렴 치료를 받은후 계속되는 호흡기 증상, 특히 밤에 발생하는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G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계속 받다가, A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진에서 니켈에 양성 반응을보이는 천식으로 확진되었다.

4 결 론

반○○의 천식은

- ①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용한 기관지유발검사에서 양성이었고,
- ② 니켈이 포함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스텐레스강을 용접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 나 천식 증상이 유발되었으며,
- ③ 2001년 8월까지 근무하면서 천식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,
- 용접작업 중 노출된 니켈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판단되었다.